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결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1·2분기에 이어 3분기 업무처리내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 ▶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수입증지 일일결산에 대하여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7건), 재정상 조치 20,500원(환급 12,000원, 추징 8,5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8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032 (2017. 12. 28.)]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기간 : 2018. 10. 29. ~ 2018. 11. 2.(5일간)
- 감 사 장 : 상설감사장
- 감사대상 : 옥련1동 등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감사분야 :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2018년 3분기)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분야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과태료 부과·징수 - 주민등록증, 재등록 신고 등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말소 처리 실태 등 ○ 통합민원발급기 수입증지 납부 처리 ○ 세외수입 거래통장 관리 실태 등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일반현황

(기준일 : 2018. 9.30.)

기관명	면 적 (km ²)	세대수	인 구(명)			행정조직		행정인력 (정원/현원)
			계	남	여	통	반	
계	50.78	126,889	340,228	169,240	170,988	499	2,600	158/160
옥련1동	2.15	8,406	21,469	10,695	10,774	32	152	12/12
옥련2동	1.93	8,058	22,498	11,148	11,350	28	169	12/12
선학동	2.41	8,154	18,723	9,558	9,165	36	176	13/13
연수1동	1.52	10,589	22,586	12,209	10,377	49	254	13/13
연수2동	1.0	9,839	23,051	11,306	11,745	35	210	13/13
연수3동	1.0	7,677	18,314	8,735	9,579	33	165	13/14
청학동	2.39	12,625	27,617	14,225	13,392	47	259	13/13
동춘1동	3.30	6,065	18,150	8,937	9,213	33	141	9/11
동춘2동	1.72	6,946	20,179	9,932	10,247	30	131	10/10
동춘3동	0.7	5,825	19,638	9,562	10,076	28	113	10/10
송도1동	9.7	10,796	34,657	17,044	17,613	39	194	11/10
송도2동	12.22	17,759	54,377	26,659	27,718	57	322	17/16
송도3동	10.74	14,150	38,969	19,230	19,739	52	314	12/13

2 업무처리 현황

(기준일 : 2018. 9.30.)

기관명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말소	비고
옥련1동	7	124	240	7	
옥련2동	4	220	398	1	
선학동	13	138	222	17	
연수1동	34	214	320	33	
연수2동	11	220	348	20	
연수3동	6	158	284	2	
청학동	16	205	310	9	
동춘1동	4	164	319	0	
동춘2동	3	109	208	4	
동춘3동	1	139	287	-	
송도1동	15	301	544	6	
송도2동	11	258	580	3	
송도3동	14	225	408	5	

Ⅲ 감사 결과

1 총 평

- ▶ 우리구에서는 13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 감사(동별 3년 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업무연찬을 실시 하였으나, 민원업무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발령과 업무분장 변경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 이에 따라,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2018년 분기별로 3회에 걸쳐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2분기에 이어 2018년 3분기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특정감사를 실시함.
- ▶ 감사결과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징수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분야에서 1·2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 ▶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감사 지적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업무 종료 후 일일결산 시 영수증, 소인 및 결산대장 입력사항 등은 다시 한번 확인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직무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반드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및 세외수입 분야 특정감사 실시결과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수입증지 일일결산 업무에 대하여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 행정상 조치 (시정 7건), 재정상 조치 20,500원(환급 12,000원, 추징 8,500원)을 처분 요구하고자 함.

2 지적사항 총괄

□ 분기별 처분현황

구 분	처분 현황	행 정 상 조 치(건)		재 정 상 조 치(원)	신 분 상 조 치(건)	비고
		시정	주의	환수.환급.추징		
계	65	52	13	총계 535,500원 과오납금반환 35,000원 환급 197,000원 추징 303,500원	-	
1 분 기	29	25	4	소계 282,400원 과오납금반환 23,700원 환급 55,000원 추징 203,700원	-	
2 분 기	29	20	9	소계 232,600원 과오납금반환 11,300원 환급 130,000원 추징 91,300원	-	1분기 처분보류 7건 포함 (과태료건)
3 분 기	7	7	-	소계 20,500원 환급 12,000원 추징 8,500원	-	

□ 3분기 처분 현황별

구 분	처분 현황	행 정 상 조 치(건)		재 정 상 조 치(원)		신분상 조치(건)	비고
		시정	주의	환수.환급.추징			
계	7	7	0	총계 환급 추징	20,500원 12,000원 8,500원	-	
☆☆☆☆	1	1	-	추징	400원	-	
★★★★	2	2	-	환급 추징	5,000원 6,000원	-	
○○○○	2	2	-	환급	7,000원	-	
●●●●	1	1	-	추징	1,200원	-	
◎◎◎◎	1	1	-	추징	900원	-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주민등록 과태료	주민등록증 수수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수입증지 일일결산	비 고
계	7	1	2	0	4	
☆☆☆☆	1				1	
★★★★	2		1		1	
○○○○	2	1	1			
●●●●	1				1	
◎◎◎◎	1				1	

3 동별 처분요구 목록

연번	동명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원)	신분상	
	계	7건(시정 7건) / 재정상 20,500원 (환급 12,000원 / 추징 8,500원)			-	
1	☆☆☆☆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증빙자료 미첨부 등) 오류	시정	추징 400	-	
2	★★★★ (2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무료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수수료 부과 대상 건 수수료 미징수(1건)	시정	환급 5,000 추징 5,000	-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증빙자료 미첨부 등) 오류	시정	추징 1,000	-	
3	○○○○ (2건)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수수료 무료 해당 건 수수료 징수(1건)	시정	환급 5,000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신규증발급 지연자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부적정 (1건)	시정	환급 2,000		
4	●●●●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증빙자료 미첨부 등) 오류	시정	추징 1,200	-	
5	◎◎◎◎ (1건)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결손처분(증빙자료 미첨부 등) 오류	시정	추징 900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주민등록 과태료 분야

1.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급 2,000원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고 또는 공고된 자는 10만원 이하,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로 기간에 따라 달리 부과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자진납부

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최고 또는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또는 공고된 자의 기준으로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다.

■ 주민등록증 수수료 분야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환급 5,000원 추징 5,000원 / ○○○○ 환급 5,000원

-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또한,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 五.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등), 성명·생년월일 또는 서열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이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1)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5. 영 제40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미용·단순한 용모변경·사진변경·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등은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한편, 보안 미적용증(2006.11.1.이전 발급된 증)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그러나, ★★★★★ 외 1개 동에서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수수료 징수 대상임에도 수수료를 미징수 하였고, 자연훼손 및 성명변경은 수수료 무료 대상임에도 수수료 5,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다.

■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 분야

1.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에 관한 사항 【☆☆☆☆, ★★★★★, ●●●●, ◎◎◎◎】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 추정 400원 / ★★★★★ 추정 1,000원 / ●●●● 추정 1,200원 / ◎◎◎◎ 추정 900원

- 「주민등록법」 제4조(수수료와 과태료 등의 귀속)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생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 시 잘못 발행 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확인하여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 하였어야 한다.
- 그러나, ☆☆☆☆ 외 3개 동에서는 결손 증빙서류가 미첨부 되고, 잘못 발행된 결손 서류의 수입증지의 표시면을 확인하지 않고 결손 처분하여 수입증지 수입금을 적게 납입한 사실이 있다.